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의안 번호	399
----------	-----

제출년월일 : 1998. 9

제 출 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행정낭비 및 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로 지적됨에 따라
- 각종 기구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조직개편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각종 기구관련조례를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

-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
-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
-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
- 파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나. 기구의 명칭변경

- 건설도시국 → 건설국
- 기획감사담당관실 → 기획실
- 문화공보담당관실 → 문화체육과
- 사회과, 가정복지과 → 사회복지과
- 산업과, 축산과 → 농축산과
- 농촌지도소 → 농업기술센터
- ○○계장 → ○○업무담당주사

㉓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도시계획계장”을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㉔ 파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㉕ 파주시광고물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7조중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㉖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토지관리계장”을 “토지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㉗ 파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토지관리계장”을 “토지관리업무담당주사”로, “토지관리계”를 “토지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㉘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시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2. 기본운영계획수립과 심사평가
3. 법제 및 소송업무
4. 예산편성 및 운용
5.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관리
6. 의회 관련업무
7. 경영수익사업 지도
8. 시정홍보에 관한 종합조정
9. 시행정의 감사
10. 진정서 처리 및 비위조사 업무
11.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12. 기타 기획·예산·공보·감사·자치에 관한 사무

제5조(총무국) ①총무국에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②총무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임용 및 조직관리에 관한사항
2. 행정구역 조정 및 관리
3. 각종 선거사무
4.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5. 국민운동 종합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6.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

7. 지방세 부과징수

8. 국도비 및 일반·특별회계 출납과 결산

9. 국공유 재산의 취득·처분·대부 및 관리

10. 지방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11. 관광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2. 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추진

13. 민방위비상대책 및 재난관리계획 수립·시행

14. 병무행정 종합관리

제6조(사회산업국) ①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를 둔다.

②사회산업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복지시책의 수립 추진

2. 여성단체 육성지도 및 관리

3.接客업소 및 위생업소 허가 및 관리

4. 묘지, 화장장, 납골당의 설치허가 및 관리

5.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6. 청소행정 종합계획 수립 추진

7. 물가안정관리

8. 중소기업육성 및 노정관리

9. 공장설립승인

10.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11. 추곡수매 및 양곡관리

12. 농지관리

13. 농축산물 유통사업

14. 축산행정의 종합기획·조정

15. 조립 및 육립사업

16. 녹지 및 공원조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제7조(건설국) ①건설국에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를 둔다.

② 건설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추진

2. 토목공사의 측량, 설계, 시공 및 지도감독

3. 도로 및 교량관리

4. 자연재해의 예방과 방지대책 및 복구

5. 민북지역 개발

6.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7.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조정

8.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9. 토지구획정리사업

10.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11. 운수행정의 종합기획조정

12.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추진

13. 상하수도 사업에 관한 기획 조정

14. 토지 및 부동산 관리

15. 지적공부 관리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제8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③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9조(소장)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업무) ①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1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91-6번지에 둔다.

제12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업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식량작물 증산 및 지도업무
3. 농기계 및 위탁영농회사 관리업무
4.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추진
5.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6. 채소, 특작, 과수,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7.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8.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사 업 소

제14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3과 같다.

제1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업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의 유지관리(취수장, 정수장, 도수관로, 가압장, 배수지등)
2.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시험
3. 정수의 가압 및 송수와 급수

4. 정수장 및 배수지의 경비
5.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6. 기타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 출 장 소

제17조(설치) ①법 제10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4와 같다.

제18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소장은 시장의 위임사무와 관할구역내의 행정전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장 읍·면·동

제20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관할구역)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
2.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
3.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4.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
5. 파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②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제2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③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기획계장”을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예산계장”을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파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중 “예산계장”을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문화계장”을 “문화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⑦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15조 제3항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⑧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⑨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체육진흥계장”을 “체육진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⑩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⑪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⑫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중 “총무계장”을 “총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⑬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문화계장”을 “문화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⑭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문화계장”을 “문화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⑮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을 “기획실소관”으로, “사회과소관”을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산업과소관”을 “농축산과소관”으로 한다.

⑯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⑰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⑱파주시여성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부녀복지계장”을 “여성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⑲파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㉔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㉕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중 “담당관·과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㉖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중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㉗ 파주시도로관리심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㉘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중 “방재계장”을 “방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㉙ 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㉚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5조 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제1호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산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제8호중 “지역개발계장”을 “지역개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과장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본청

제3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국을 둔다.

[별표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파주시 보건소	파주시 아동동 345-1	파주시 일원
" 문산보건지소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61-48	문산읍 일원
" 파주보건지소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375-17	파주읍 일원
" 법원보건지소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376	법원읍 일원
" 월릉보건지소	파주시 월릉면 위전리 594-3	월릉면 일원
" 탄현보건지소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877-1	탄현면 일원
" 교하보건지소	파주시 교하면 교하리 387-1	교하면 일원
" 조리보건지소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188-7	조리면 일원
" 광탄보건지소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134-1	광탄면 일원
" 파평보건지소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284-1	파평면 일원
" 적성보건지소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48-1	적성면 일원

[별표 2]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법원읍 응담보건진료소	법원읍 응담리 327	응담리, 직천리, 오현리 일원
탄현면 문지보건진료소	탄현면 문지리 251	문지리, 오금리, 낙하리, 금송리 일원
교하면 야당보건진료소	교하면 상지석리 산38-5	야당리, 상지석리, 와동리, 목동리 일원
광탄면 영장보건진료소	광탄면 영장리 295-8	영장리, 기산리 일원
파평면 마산보건진료소	파평면 마산리 387	마산리, 두포리, 법원읍 금곡리 일원
적성면 장현보건진료소	적성면 어유지리 365-3	장현리, 어유지리, 적암리, 울포리 일원
군내면 백연보건진료소	군내면 백연리 86	백연리, 조산리 일원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4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상수도사업소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00-2번지

[별표 4]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7조 관련)

출 장 소 명	위 치	관 할 구 역
군내출장소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480-1번지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장단면 일원